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1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이종욱<br>의원안) ..... | 2 |



## I. 개요

###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17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 현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안 제91조의22)                                                                                              |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 ○ 가입대상<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총급여액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                                                                                       | ○ (현행과 같음)                                       |
| ○ 요건<br>-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br>-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br>-다음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br>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현행과 같음)                                       |
| ○ 특례내용<br>-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현행과 같음)                                       |
|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br>- <u>2025년 12월 31일</u>                                                                                                                 |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br>- <u>2027년 12월 31일(이종욱의원안)</u> |

\* 이종욱의원안 2024. 12. 27. 발의(의안번호 701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일정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 시 신설됨.

- 청년층<sup>1)</sup>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sup>2)</sup>”의 가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2년 정기회 심의를 거쳐 신설·도입되었고, 법 개정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개 은행<sup>3)</sup>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적금상품으로, 해당 계좌에 월 70만원을 한도(연 840만원)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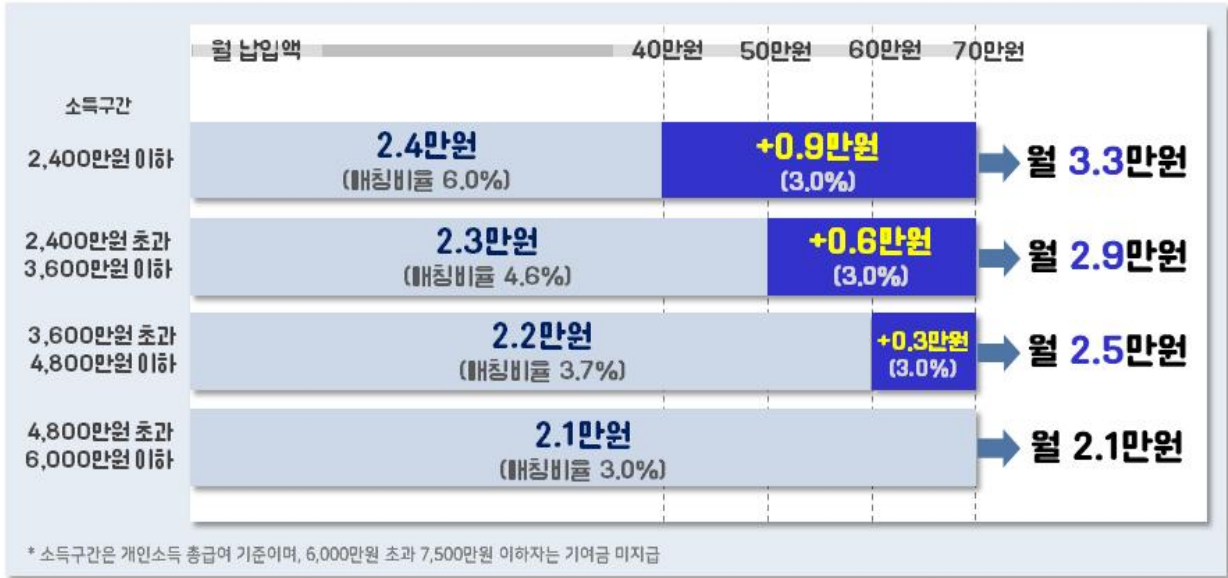
1)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했던 2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였음.

3)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유지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고, 2025년 1월부터는 정부기여금의 매칭한도를 확대하였음<sup>4)</sup>.

[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4. 12. 27.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조세지출은 2023년도 6월 최초 가입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지출<sup>5)</sup>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도별 기여금 예산은 2023년도 3,440억원, 2024년도 3,590억원, 2025년도 3,368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개정 전에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매칭한도까지만 기여금을 지원하였음.

| 개인소득       |            | 매칭한도 |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5) 해외이주, 혼인, 출산 등 특별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일부 조세지출 발생

금융위원회<sup>6)</sup>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는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88%로<sup>7)</sup>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청년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바,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며, 초봉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59.8%로 나타나는 등<sup>8)</sup>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둘째,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 지급은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에게 소비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수단으로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9)</sup>.

6)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024. 12. 27.

7)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31.)

8)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4. 7.

□ 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동 특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계의 경우 저축, 자산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흑자액<sup>10)</sup>이 없고, 2분위·3분위 가계의 경우도 자산구입이나 부채상환 등 고려 시 한도금액(월 7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24. 4/4)]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소 득                  | 1,213 | 2,910 | 4,406 | 6,342 | 11,199 |
| 가계지출                 | 1,562 | 2,415 | 3,652 | 4,735 | 7,186  |
| 소비지출                 | 1,386 | 1,971 | 2,761 | 3,497 | 4,898  |
| 비소비지출                | 177   | 443   | 891   | 1,238 | 2,288  |
| 처분가능소득 <sup>1)</sup> | 1,037 | 2,467 | 3,515 | 5,104 | 8,912  |
| 흑자액 <sup>2)</sup>    | -349  | 496   | 754   | 1,607 | 4,014  |

주: 1)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2)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통계청,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5. 2. 27.

문 의 처

02)6788-5161

9)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31.)

10)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통계청